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292

발의연월일: 2025. 1. 7.

발 의 자 : 김 윤 • 주철현 • 김우영

전진숙 • 백혜련 • 박해철

서미화 · 서영석 · 이수진

박희승 • 정진욱 • 박지원

민형배 · 장경태 · 김남근

정태호 • 전현희 • 김문수

강준현 • 양부남 • 권향엽

임미애 · 오세희 · 장종태

의원(2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법 체계에는 전임의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근거 규정이 부재함. 세부전문의 및 분과전문의로서 전임의의 역할과 법적 지위가 불분명함에 따라 의료현장에서 전임의의 임금, 근로조건, 수련환경 등이적절히 관리 및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한의학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2개 이상의 전문과목 분야로 구성된 세부전문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된 자를 '세부전문의'라 하고, 1개의 전문과목 분야에서 세분화된 분과전문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된 자를 '분과전문의'로 하고, 세부전문의 및 분과전문의 수련과정에 있는 전문의를 '전임의'로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

으로 관리 및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7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의 제목 "(전문의)"를 "(전문의·전임의 등)"으로 하고, 같은 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자격 인정을 받은 전문의 중 대한의학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2개 이상의 전문과목 분야로 구성된 세부전문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된 자를 세부전문의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자격 인정을 받은 전문의 중 대한의학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1개의 전문과목 분야에서 세분화된 분과전문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된 자를 분과전문의라 한다. 이 경우 세분화된 분과전문부야는 법정 전문과목학회의 기준에 따른다.
- ⑤ 제3항의 세부전문의 및 제4항의 분과전문의 수련과정에 있는 전문의를 전임의라 한다. 이 경우 세부전문의 및 분과전문의 수련과정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7조 <u>(전문의)</u> ①·② (생 략)	제77조 <u>(전문의·전임의 등)</u> ①·
<u><신 설></u>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자격 인정을
	받은 전문의 중 대한의학회에
	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2개 이
<u><신 설></u>	<u>상의 전문과목 분야로 구성된</u>
	세부전문분야의 전문가로 인정
	된 자를 세부전문의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자격 인정을
	받은 전문의 중 대한의학회에
	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1개의
	전문과목 분야에서 세분화된
	분과전문분야의 전문가로 인정
	된 자를 분과전문의라 한다. 이
<u><신 설></u>	경우 세분화된 분과전문분야는
	법정 전문과목학회의 기준에
	<u> 따른다.</u>
	⑤ 제3항의 세부전문의 및 제4
	항의 분과전문의 수련과정에
	있는 전문의를 전임의라 한다.
	이 경우 세부전문의 및 분과전
	문의 수련과정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u>④</u> (생 략)

<u>⑥</u> (현행 제4항과 같음)